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347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윤종복, 이성배, 이숙자,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허·훈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창업지원 정책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창업지원 정책 수립·개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2.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의 활용)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결과를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지역창업전담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재정적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창업정책과)에 확인한 결과는 기추진사업¹⁾으로 해당 사업을 추가확대하지 않는 한 서울시 재정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5조(행정적 지원)와 제6조(성과의 활용)는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 2026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 1,389,570천원